### ■ 주세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3. 2. 28.>

##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(제3조제1항 관련)

# 1.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

주류 종류	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
가. 법 별표 제2호나목4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 및 법 별표 제3호가목1)부터 4)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
나. 법 별표 제2호다목2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
다. 법 별표 제2호라목3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
라. 법 별표 제2호마목5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, 브랜디, 일 반 증류주
마. 법 별표 제3호나목5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
바. 법 별표 제3호다목2)	주정(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)

## 2.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

### 가. 주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

/ I · I II	0 1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
주류 종류	첨가할 수 있는 재료	비고
1) 법 별표	아스파탐 • 스테비올배당체 • 효소처리스테	·식물을 주정 등으로
제2호가	비아・사카린나트륨・젖산・주석산・구연	추출하는 경우 그 추
목3)	산 · 아미노산류 · 수크랄로스 · 토마틴 · 아	출액의 알코올분 총
	세설팜칼륨・에리스리톨・자일리톨・산탄	량은 최종제품의 알
	검 •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• 당분 • 알룰	코올분 총량의 100분
	로오스, 「식품위생법」상 허용되는 식물	의 5를 초과할 수 없
	(물 또는 주정 등으로 추출한 액을 포함한	다.
	다. 이하 "식물"이라 한다)	
2) 법 별표	아스파탐 • 스테비올배당체 • 효소처리스테	
제2호나	비아・젖산・주석산・구연산・아미노산류	
목3)	·식물·수크랄로스·토마틴·아세설팜칼	
	륨・에리스리톨・자일리톨・당분	
3) 법 별표	아스파탐・스테비올배당체・효소처리스테	・식물 중 알코올분 1
제2호다	비아・젖산・주석산・구연산・아미노산류	도 이상으로 발효시
목1)	·식물·수크랄로스·토마틴·아세설팜칼	킬 수 있는 것은 제외
	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	한다.
4) 법 별표	당분・산분(酸分)・조미료・향료・색소	·주정이 첨가되는 경
제2호다		우에만 사용할 수 있
목2)		다.
5) 법 별표	당분・산분・조미료・향료・색소・식물・	
제2호라	아스파탐・스테비올배당체・솔비톨・수크	

목2) 및	랄로스・아세설팜칼륨・에리스리톨・자일	
3)	리톨・효소처리스테비아・우유・분유・유	
3,	크림·아스코르빈산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	
	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·증점	
	제·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	
	일하게 유지시키는 것	
6) 법 별표	당분・산분・조미료・향료・색소・아스파	
제2호마	탐・스테비올배당체・솔비톨・수크랄로스	
목4) • 마	·아세설팜칼륨·에리스리톨·자일리톨·	
목5)	효소처리스테비아	
7) 법 별표	사카린나트륨・아스코르빈산・식물・아스	
제2호마	파탐・스테비올배당체・솔비톨・수크랄로	
목6)	스・아세설팜칼륨・에리스리톨・자일리톨	
	· 효소처리스테비아	
8) 법 별표	당분 • 구연산 • 아미노산류 • 솔비톨 • 무기	·당분은 제성과정(製
제3호가	염류 • 스테비올배당체 • 효소처리스테비아	成過程)에서만 사용
목2) 및	·사카린나트륨 · 아스파탐 · 수크랄로스 ·	할 수 있다.
7)	토마틴・아세설팜칼륨・에리스리톨・자일	
	리톨・다(茶)류(단일침출자 중에서 가공곡	
	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) • 알룰로오스	
	• 오크칩	
9) 법 별표	당분・산분・조미료・향료・색소	
제3호나		
목5)		
10) the first term   10	당분・산분・조미료・향료・색소	
표 제3		
호다목		
2) 11) 법 별	당분・산분・조미료・향료・색소・식물・	
TID 점 될 표 제3		
효 세3		
' '		
	리톨・효소처리스테비아	
10)까지 12) 법 별	당분・산분・조미료・향료・색소・식물・	
표 제3		
호마목	라고	
エリコ	리톨 • 효소처리스테비아 • 우유 • 분유 • 유	
	크림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	
	그님, '식품위생법」에 따라 어용되는 식물 품첨가물 중 유화제・증점제・안정제 등	
	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	
	1	I.

	키는 것	
13) 법 별	당분・산분・조미료・캐러멜색소	
표 제4		
호다목		

※ 비고: 위 표에 따른 재료 중 당분·산분·조미료·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.

구분	첨가재료의 종류
1. 당분	설탕(백설탕・갈색설탕・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)・포도당(액상포
	도당・정제포도당・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)・
	과당(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)·엿류(물엿·맥아엿 및 덩어
	리엿을 포함한다) • 당시럽류(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) • 올
	리고당류・유당 또는 꿀
2. 산분	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산도
	(酸度) 조절제로 사용되는 것
3. 조미 료	아미노산류・글리세린・덱스트린・홉・무기염류・탄닌산・오크칩
4. 향료	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향료
	로 사용되는 것
5. 색소	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착색
	료로 사용되는 것

나.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

주류에는 가목에 따른 재료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.

- 1) 이산화탄소, 질소, 산소
- 2)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보존 료(保存料)로 사용되는 것
- 3)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효모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것